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093
----------	-------

발의연월일 : 2026. 6. 2.

발 의 자 : 이정현 · 허성무 · 박홍배
강준현 · 조인철 · 김우영
김 현 · 손명수 · 정혜경
이훈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가 채용광고를 내는 경우 거짓 채용 광고 금지, 개인정보 요구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구직자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임금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는 담고 있지 않음.

이에 구인자는 임금에 대해 ‘협의 후 결정’ 또는 ‘내규에 따름’과 같은 모호한 문구를 사용하여 채용광고를 내고 있고, 대다수의 구직자는 근로 조건의 핵심인 임금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채용절차에 응하게 되어 추후 낮은 임금을 확인하고 지원을 포기하는 일이 반복하여 발생하게 되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됨.

이에 구인자는 채용광고를 내는 경우 임금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여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구직자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를 “(채용광고시 준수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구인자는 채용하려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급하는 임금의 상한액과 하한액 등 임금에 관한 사항을 채용광고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7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임금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구인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금의 명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채용광고를 내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 ④ (생략) <u><신설></u>	제4조(채용광고시 준수사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구인자는 채용하려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급하는 임금의 상한액과 하한액 등 임금에 관한 사항을 채용광고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7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 (생략) <u><신설></u>	제17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2. (현행과 같음) 3. 제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임금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아니한 구인자
3. (생략) ③ · ④ (생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